

과 목						추가경정 예산안	수 정 예산안	증(△)감	수 정 내 역
장	관	항	세항	세세항	목				
					401 시설비등	25,619,000	25,988,000	369,000	(04) 시 설 비 • 중랑천외 4개하천 분류하 수관로공사(도봉) 591,000→0(△591,000) • 방학1동~신도봉로간 하 수암거개량 0→560,000(560,000) • 면목7동 650주변 하수도 개량 0→400,000(400,000)
			1212	탄천처리구역		5,552,000	6,052,000	500,000	
			242	자 체 ( 계 속)사업		5,552,000	6,052,000	500,000	
					401 시설비등	5,552,000	6,052,000	500,000	(04) 시 설 비 • 암사동 178 선사마을 하 수암거개량 0→500,000(500,000)
			1230	종말처리장		44,289,500	43,189,500	△1,100,000	
			1233	가양처리구역		36,165,300	35,065,300	△1,100,000	
			242	자 체 ( 계 속)사업		36,165,300	35,065,300	△1,100,000	
					401 시설비등	36,165,300	35,065,300	△1,100,000	(04) 시 설 비 • 가양처리장 증설 35,117,000→34,017,000 (△1,100,000)
			1400	예 비 비		3,319,199	3,110,199	△209,000	
			1410	예 비 비		3,319,199	3,110,199	△209,000	
			1411	예 비 비		3,319,199	3,110,199	△209,000	
					410 예비비	3,319,199	3,110,199	△209,000	
					801 예비비	3,319,199	3,110,199	△209,000	

  

<p>.....</p> <p>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3조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</p>	<p>이 신설한다.</p> <p>제3조(공동주관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 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 고 있는 신문사로서 상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신문사(이하 “공동주 관신문사”라 한다)와 공동으로 시상한 다.</p>
--	--

안 제4조제2항 단서중 “시장은”을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시장은 공동주관신문사와 협의하여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

①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,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공동주관신문사가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안 제10조중 “시장이”를 “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신문사가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3항중 “서울특별시장은”을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신문사는”으로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시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,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공동주관신문사가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안 제10조중 “시장과 공동주관신문사”를 “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신문사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	발의년월일 : 1998.7.16 발 의 자 : 최충민의원 외 13명
----------	----------	--

1. 수정이유

○시정개혁위원회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·인사제도 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참여하여 시의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13조제1항)  
○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한다.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○예산조치 : 별도 필요조치 없음.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중 “20인”을 “21인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과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	제안년월일 : 1998.7.15 제 안 자 : 정현균의원 외 1명
----------	----------	---

1. 수정이유